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지정개발자)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자(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재건축사업

나. 명 칭 : 삼환도봉아파트 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법인의 명칭 : (주)코람코자산신탁

나. 사무소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3층 (삼성동, 아이콘 삼성)

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정승희 , 이충성 (☎02-787-0000)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11,3층 (삼성동, 아이콘 삼성)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87번지 일대

나. 면 적 : 30,131.8m²

4.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사업의 착수예정일 : 2026년 02월

나. 사업의 준공예정일 : 2032년 09월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02-2091-34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4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5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는 바, 구민의 혼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조문 삭제(안 제6조의2, 제7조의2 삭제)

다. 의료지원을 치과치료 지원으로 수정하여 사업 내용 명확화

○ 의료지원 → 치과치료 지원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 의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6층 의약과

【전화 : 02-2091-4659, 팩스 : 02-2091-6281, 전자우편 : pjy3@dobong.go.kr】

라.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알림/예산>알림마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 “정부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학생 치과주치의 지원사업이 종료되었는 바, 구민의 혼동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나.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관련 조문 삭제(안 제6조의2, 제7조의2 삭제)

다. 의료지원을 치과치료 지원으로 수정하여 사업 내용 명확화

- 의료지원 → 치과치료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구강보건법」 등, 붙임 1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1)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

3) 인권영향평가:

4) 아동영향평가: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2.~3. 4.(20일간)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2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 중심
의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

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2. “치과치료 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된 치과치료 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치과치료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치과치료 지원사업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치과치료 지원에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대한 일정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 및 진료 범위 세부 내용)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진료 범위 세

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7조(치과치료 지원비 신청) ①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 지원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지원 대상 아동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진료 내용
3. 치과치료 지원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치과치료 지원에 관련된 서류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의 설치)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 지원 지역 협의체를 둔다.

제9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치과치료 지원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
2.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장
2.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
3. 구강보건 관련 전문가
4.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치과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치과치료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치과치료 지원 활동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치과치료 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

■ 「구강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인력 양성 등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사업 대상 및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비용 및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의약과 박지영
연 락 처	02-2091-4659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5호(2023.11.1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2024.10.17.)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02. 06. ~ 2026. 02. 20.(14일간)
2. 공람장소: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22)
3. 공람사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01.15.) 및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 제도 시행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4. 공람내용: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5.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도봉구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37,319.8㎡	전체: 129동 노후·불량: 99동(76.7%)	-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나. 관리계획(2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2)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3) 교통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6)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기정(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799	164	-	-
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73	76	-	-
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6-8번지 일대	426	88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변경(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주택 비율)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799	107	-	13.39%
1-1	사업가능구역1-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373	50	-	13.40%
1-2	사업가능구역1-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6-8번지 일대	426	57	-	13.38%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¹⁾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²⁾
 -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향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다. 관리계획(4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2)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3) 교통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6)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기정(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881	178	-	-
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881	178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변경(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주택 비율)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881	118	-	13.39%
1	사업가능구역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881	118	-	13.39%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¹⁾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²⁾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향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3. 관련도면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4. 관계도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의견서

안건	쌍문동 494-22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공고
공람기간	2026. 2. 6. ~ 2026. 2. 20.
의견제출인	성명 또는 명칭 : (연락처:)
	주 소 :
	소유물건 :
의견내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96호(2023.11.16.)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2024.10.17.)로 변경 고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6년 02월 06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공람기간: 2026. 02. 06. ~ 2026. 02. 20.(14일간)
2. 공람장소: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02-2091-3422)
3. 공람사유: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01.15.) 및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세부기준」 제도 시행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위한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
4. 공람내용: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
5. 기타사항: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관계도서: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	위치	관리계획 요건	노후·불량건축물	비고
기준	도봉구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일 것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
현황		83,526.0㎡	전체 : 280동 노후·불량 : 233동(83.2%)	-

다. 정비방향: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 계획을 통해 저층 노후주거지의 계획적 공동개발 유도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나. 관리계획(2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2)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3) 교통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6)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기정(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935	371	-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2-4번지 일대	348	70	-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470	92	-	-
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402	66	-	-
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번지 일대	369	68	-	-
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8번지 일대	346	75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변경(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주택 비율)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935	226	-	11.68%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2-4번지 일대	348	47	-	13.51%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470	60	-	12.77%
2-3	사업가능구역2-3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402	43	-	10.70%
2-4	사업가능구역2-4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번지 일대	369	45	-	12.20%
2-5	사업가능구역2-5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6-18번지 일대	346	31	-	8.96%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¹⁾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²⁾
 -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용도지역 상향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다. 관리계획(4만㎡ 미만 시행시)

1) 토지이용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2)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3) 교통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4)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5)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6)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의 밀도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7) 건축물의 배치·형태·용도·건축선 등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8)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 계획(안)

○ 기정(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997	315	-	-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1,094	143	-	-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903	172	-	-

1)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변경(안)

구분		위치	전체세대	임대주택	임대주택 인수예정자	비고 (임대주택 비율)
도면 표시번호	사업구역					
합 계			1,997	244	-	12.22%
2-1	사업가능구역2-1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1,094	131	-	11.97%
2-2	사업가능구역2-2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	쌍문동 484-7번지 일대	903	113	-	12.51%

1)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임대주택 인수예정자와 협상 예정

2) 상기의 세대수, 임대주택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준공인가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개별 사업시행계획(안) 통합심의 시 세입자 보호대책 마련하여 제출(가로주택정비사업형에 한함)

※ 사업시행구역 내 개별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결정

■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계획 변경 사유서

변경내용	변경 사유	비고
임대주택 건설비율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2026.1.5.)에 따른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 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신설)

- 모아타운 관리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시, 통합심의 직전연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며,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심의 신청 시, 직전연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정계수를 확정함
- 산식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¹⁾ / 사업시행구역 평균 공시지가²⁾
 - 1) 매년 서울시가 산정하여 공개하며, “재개발사업”의 평균공시지가 적용
 - 2)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모든 용도지역의 대지(지목)를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 공시지가(면적 가중평균)
-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방법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시 개정 조례에 따름)

1) 조례 제44조의4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 (용도지역 상향시)

$$\text{임대주택 공급비율} = \text{증가된 용적률} \times 100\text{분의 } 50^{1),2)} \div \text{사업성 보정계수}$$

- 1) 조례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공공참여)의 경우 100분의 30 적용
- 2)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100분의 15까지 완화 가능

2) 조례 제50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 상한 (임대주택 건설 특례)

$$\text{용적률 상한} = a + (\text{해당 공공임대 주택건설비율} \times 100(\%) \times \alpha \times \beta) + b + c$$

- α (적용계수) = 2.5 (단, 준주거지역의 경우 5)
- β (보정계수) = 사업성 보정계수
- a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55조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
- b =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증가된 용적률(%)
- c = 관리지역에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지 않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용하여 세입자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용적률(%) (최대 25 퍼센트 이내)

9)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10)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안)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2호와 동일)

3. 관련도면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4. 관계도서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결정도서 참조

5. 관리계획 및 관리지역 결정도

- 변경없음(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91호와 동일)

의 견 서

안 건	쌍문동 524-87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변경(안) 주민공람·공고
공람기간	2026. 2. 6. ~ 2026. 2. 20.
의견제출인	성명 또는 명칭 : (연락처:)
	주 소 :
	소유물건 :
의 견 내 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도봉구청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제출방법 : 도봉구청 재건축재개발과에 방문 제출 또는 우편 제출

※ 우편주소 : (01331)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 도봉구청 12층 재건축재개발과

2026년 도봉구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공고

2026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9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2026년도 제1차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1 국공립어린이집 변경위탁 위탁체 선정

어린이집명	소재지	선정 운영체	비고
도봉숲어린이집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84-10(도봉동)	학교법인 꽃동산학원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7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완함

- “표지판”에서 “표찰”로 명칭 변경
- “소모품 보급”에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지원 항목 확대
-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 항목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지역경제과

【전화: 02-2091-2885, 팩스: 2091-6265, 전자우편: sh.sin@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인근 업소 대비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여 물가안정 정책기조에 동참하는 착한가격업소의 확충을 위해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운영제도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완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2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완료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해당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2.~2026. 3. 4.(20일 이상)

나) 제출된 의견: 총 건(세부 건) 또는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표지판”을 “표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모품 보급”을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 ----- ----- ---
1. “착한가격업소” 지정 <u>표지</u> <u>판 교부</u>	1. ----- <u>표찰</u> -----
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u>소모품 보급</u>	2. ----- ----- <u>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u>
3.·4. (생략) <u><신설></u>	3.·4. (현행과 같음) 5. <u>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u> <u>료 등의 공공요금</u>
5. (생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관 계 법 령】

▣ 「서울특별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착한가격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표찰
2. 각종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3. 쓰레기봉투 등 필요물품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
5.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촉활동
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지정 업소에 대한 표찰 교부, 기자재 구입비,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비용이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제13조(비용추계서 작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26년 기준 예산은 [총 67,522천원 (국비 50%, 시비 50%)]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신승혜
연 락 처	02-2091-2885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서울특별시 도봉구 읍부즈만 운영상항 공표

「서울특별시 도봉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읍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5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읍부즈만 운영상항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2026. 2. 9.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고충민원의 접수 상항 및 그 처리결과

○ 고충민원 접수 유형

합 계	직접신청			검토 민원	이송 민원
	인터넷	방문	우편		
47건	46건	1건	-	-	-

○ 민원 처리결과

합 계	고충민원							일반민원 (방문, 전화상담)
	소 계	검토중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이첩	종결	
109건	47건	-	-	2건	2건	40건	3건	62건

2. 읍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 계
-	2건	2건

3. 읍부즈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결정유형 \ 수용여부	합 계	수용	불수용	진행 중
합 계	2건	2건	-	-
시정권고	-	-	-	-
의견표명	2건	2건	-	-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75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용자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
나. 이 조례의 폐지 후 채권·자금 등은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미상환된 용자금은 상환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지역경제과
【전화: 02)2091-2873, 팩스: 02)2091-6265

E-mail: quartz2@dobong.go.kr】

※ 보내실 경우 주관부서로 수신여부 확인 전화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용자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
나. 이 조례의 폐지 후 채권·자금 등은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미상환된 용자금은 상환 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2026. 2. 12. ~ 3. 4.(20일간)
- 2)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불임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채권 등의 모든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용되어 온 특별회계의 자금·잉여금 등은 일반회계에 귀속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상환되는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 등은 도봉구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처리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상환 중이거나 거치기간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저소득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삭제
2.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3. 융자회수금,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 및 그 밖의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융자금과 그 밖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출로 한다.

제5조(융자대상) ①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면서 생계가 곤란하고 자립 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가구로 한다.

1. 소규모 제조업 및 서비스업, 영세 상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종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

2.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생계자금

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자금

4.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②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자라도 거리질서와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업
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용자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용자대상을 선정할 때에 필요하면 소속 공
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제5조에 따른 용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
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용자한도 및 이율 등) 용자한도 및 이율 등 용자조건에 관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용자금의 대부신청) 용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으
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거주지 동장의 추천
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대상자 선정 통지)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알려 대출하도록 하고,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 등)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자 등) 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징수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이자징수의 예에 따르며, 매월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환기한이 경과된 후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의 회수) 융자금의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의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3조(감독) ①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융자금 이용 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에게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융자금의 운용상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중복 융자의 금지) 융자금 지원대상자에게는 융자금 전액상환 이전에 다른 사유로 다시 융자할 수 없으며, 1세대 1명에게만 융자할 수 있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구청장은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금 지원대상자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3. 1세대 2명 이상 중복해서 융자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16조(융자금 반환통지) 구청장은 제15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융자금 지원대상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 ·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073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융자한도 및 이율 등 융자조건에 관한 사항과 융자금의 상환 및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규칙

이 마련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융자대상 선정위원회로 본다.

제3조(융자된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93호, 2018.10.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8호,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비용 및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지역경제과 전수정
연 락 처	02-2091-2873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7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용자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지급 및 용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지역경제과
【전화: 02)2091-2873, 팩스: 02)2091-6265

E-mail: quartz2@dobong.go.kr】

※ 보내실 경우 주관부서로 수신여부 확인 전화 바랍니다.

라.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1. 제안이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의 용자 실적이 저조하고 유사 목적의 용자 사업과의 중복으로 사업 실효성이 감소하는 등 사업 본래의 취지와 존치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
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자된 자금의 지급 및 용자대상자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2026. 2. 12. ~ 3. 4.(20일간)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용자
와 관련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용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4명과 위촉직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과장, 가족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봉구의회 의원 2명과 관내 학식과 덕망 있는 사람 중 1명으로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금의 대부신청)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부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정자금 대부신청서 및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생활안정자금 사용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융자금의 대출) ① 구청장은 자금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 4회 이내로 융자금을 대출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융자금을 수시로 대출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 결정통지를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 대상자를 통지 받은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구청장의 융자대상자 취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상 융자 대상자로 적합하지 않을 때

2. 용자 대상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금을 수령하지 아니할 때

제5조(용자조건) ① 가구당 용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용자금의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되, 필요시 시중금융권의 대출금리 변동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용자금의 상환) 용자금의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로 상환 하며, 거치기간 만료 후 연 1회씩 균등분할 상환한다.

제7조(용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 구청장은 용자금 지원대상자가 천 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 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용자금 지원대상자가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용자 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용자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할 동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10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탁 금융기관의 장과 상환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자금 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생활안정자금 대여약정 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수탁금융기관의 장과 약정 체결 시에는 자금을 대여하고, 대여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낮게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을 대여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금대여신청서

2. 차용증서

3. 영수증

④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자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한다.

제9조(운용상황의 제출)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자금운용·관리상황 보고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분기 말 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대출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대출자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생활안정자금 수혜가구 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규칙 제793호, 2015.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896호, 2020. 6.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자조건 및 용자금 상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899호, 2020. 6. 25.>(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신경제일자리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 칙 <규칙 제947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신경제일자리과장, 여성가족과장”을 “지역경제과장, 가족정책과장”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검토의견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검토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87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강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징수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 평생학습관 중심의 규정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

나.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및 별표 1, 별표 2 신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및 반환 기준 별표로 신설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교육지원과

【전화: 02-2091-2335, 팩스: 2091-6254, 전자우편: 201501317@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현행 조례를 보완하여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수강료 징수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강료 징수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범위 확대(안 제20조제1항)

○ 평생학습관 중심의 규정을 평생교육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대

나.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마련(안 제20조제4항 및 별표 1, 별표 2 신설)

○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 및 시설 사용료 기준 및 반환 기준 별표로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2.~3. 4.(20일간)

나) 제출된 의견: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의 제목 “평생학습관”을 “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를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액과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로 한다.

제21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제24조 및 제25조로 하고,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23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2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보칙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 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월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9,000원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수강료는 기준금액 50퍼센트 이내로 징수할 수 있음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18,000원	
	30시간 이하 프로그램	27,000원	
	30시간 초과 프로그램	36,000원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구 분	면 적	사용료	비 고
시설별	대강의실	135.18㎡	1회당 20,000원
	소강의실	80.78㎡	1회당 10,000원
	전산교육실	78.41㎡	1회당 20,000원
	학습모임실	45.45㎡	1회당 5,000원
비고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퍼센트 가산 ○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학습모임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별표 2]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모집정원 미달, 시설 및 구의 사정 또는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나.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 한 경우	1)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가)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나)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라)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2) 수강료 징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가)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나)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 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강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 (수강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수강회차를 열거나 수강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수강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 강료를 반환한다.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반환사유	반환금액
가.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라.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장 <u>평생학습관</u>	제3장 <u>평생학습관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u>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① 구청장은 <u>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용자</u> 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 수강료 및 사용료의 <u>금액과 징수방법</u> 등은 <u>규칙으로 정한다</u> .	제20조(수강료 및 사용료 징수) ① ----- <u>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자</u> -----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u>기준</u> <u>은 별표 1과 같다</u> .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구청장은 <u>소상공인 간편 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u> 으로 수강료 및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게 <u>해당 수강료 및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u> . 다만,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제21조(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4장 보칙

<신 설>

제23조 · 제24조 (생 략)

<신 설>

제23조(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삭 제>

제4장 보칙

제24조 · 제25조 (현행 제23조 및
제24조와 같음)

[별표 1]

수강료 및 사용료 기준(제20조제4항 관련)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월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9,000원	○ 실습재료비 및 교재비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수강료는 기준금액 50퍼센트 이내로 징수할 수 있음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18,000원	
	30시간 이하 프로그램	27,000원	
	30시간 초과 프로그램	36,000원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구 분		면 적	사용료	비 고
시설별	대강의실	135.18㎡	1회당 20,000원	
	소강의실	80.78㎡	1회당 10,000원	
	전산교육실	78.41㎡	1회당 20,000원	
	학습모임실	45.45㎡	1회당 5,000원	
비고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퍼센트 가산 ○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학습모임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신 설>

[별표 2]

수강료 및 사용료 반환 기준(제23조 관련)

1.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반환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가. 모집정원 미달, 시설 및 구의 사정 또는 제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의를 개설할 수 없거나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수강료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나. 수강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나)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수강료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수강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라)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가) 수업시작 전	이미 낸 수강료 전액
	나)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1)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수강료를 일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수강료 정수기간"이란 정수된 총수강료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수강료 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에 이루어지는 수강에 대한 수강료 반환금액은 이미 낸 수강료에서 실제 수강한 부분(수강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수강회차를 열거나 수강기간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수강회차를 수강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전여 회차를 기준으로 수강료를 반환한다.

2.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반환

반환사유	반환금액
가.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나. 사용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다. 사용자가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라. 사용자가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수강료 등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교육지원과 이상호
연 락 처	02-2091-2335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88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동하여, 그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관련 사항 삭제(안 제2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5)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6층 교육지원과

【전화: 02-2091-2335, 팩스: 2091-6254, 전자우편: 201501317@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수강료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이동하여, 그 사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수강료 및 사용료 관련 사항 삭제(안 제25조제1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별표 3 및 별표 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2.~3. 4.(20일간)

나) 제출된 의견: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3”을 “조례 별표 1”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수강료 등) 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u>별표 3에</u>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수강료 등) ① ----- ----- ----- ----- <u>조례 별표 1</u> ----- ----- -----.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수강료 반환) ① <u>수강신청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평생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u> 이 경우 “학습자”는 “수강신청자 또는 수강생”으로, “학습”은 “수강”으로, “학습비”는 “수강료”로 본다.	제25조(수강료 반환) <삭 제>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사용료 등) ① <u>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5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u>	제32조(사용료 등) <삭 제>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생략)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 반환
2. 사용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
3. 사용일 4일 전에서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1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4.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남은 일수에 대한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남은 금액 반환

③ (생략)

제3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

도봉구 평생학습관 수강료 기준(제24조제1항 관련)

단위	대 상	기준금액	비 고
월	10시간 이하 프로그램	10,000원	◦ 실습재료비, 교재비는 본인부담 ◦ 하한금액은 기준금액의 20% 이내로 한다.
	20시간 이하 프로그램	20,000원	
	30시간 이하 프로그램	30,000원	
	30시간 초과 프로그램	40,000원	

<삭 제>

[별표 5]

도봉구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제32조제1항 관련)

구 분	면 적	사용료	비 고
시설별	대강의실	135.18㎡	1회당 20,000원
	소강의실	80.78㎡	1회당 10,000원
	전산교육실	78.41㎡	1회당 20,000원
	회의실	34.83㎡	1회당 5,000원
	동아리실	19.18㎡	1회당 5,000원
특기 사항	○ 1회 사용시간은 2시간 기준 - 1시간 초과 시 마다 시간당 50% 가산 ○ 도봉구 평생학습관에 등록된 학습동아리는 동아리실 1일 1회 사용료 면제 - “학습동아리”란 평생교육의 개념과 지역 커뮤니티의 연계를 통한 학습 공동체로서 자발적·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정해진 주제에 대해 학습, 토론, 사회활동을 하며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학습 소모임을 말한다.		

<삭 제>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89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체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해체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대상 마련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건축과

【전화: 02-2091-3682, 팩스: 2091-6344, 전자우편: wnsrb0125@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건축물 해체와 관련하여 해체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해체공사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체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2항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인 해체허가 대상의 구체적인 대상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축물관리법」, 붙임 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완료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2.~3. 4.(20일간 예정)

나) 제출된 의견: 입법예고 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지하도 출입구, 횡단보도를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폭 3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관 계 법 령】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어린이집”이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의 조문 중 건축물의 해체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축과 박준규
연 락 처	02-2091-3682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 조례

(건축과)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90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
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조, 제6조)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 신설[안 제7장(제27조~제29조), 부칙 제3조]

-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규정 신설(안 제27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안 제28조)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10층 감사담당관

【전화: 02)2091-2064, 팩스: 02)2091-6309, E-mail: ekdse@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선정 대리인 관련 조항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조, 제6조)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 신설[안 제7장(제27조~제29조), 부칙 제3조]

-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규정 신설(안 제27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안 제28조)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완료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2026. 2. 12. ~ 3. 4.(20일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를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를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로 한다.

제7장의 제목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28조를 각각 제30조 및 제31조로 하고,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

자와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자, 납세자, 선정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선정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대리인과 관련된 행위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5호에서 “조 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3. (생략)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영 제51조의2제1항제7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 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 3. (생략)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5호----- ----- -----. 1. ~ 3. (현행과 같음)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신설>	제7장 선정 대리인
<신설>	제27조(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 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 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 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일자, 납세자, 선정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2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

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

<u><신 설></u> <u>제27조</u> · <u>제28조</u> (생 략)	<u>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u> <u>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8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u> <u>제30조</u> · <u>제31조</u> (현행 제27조 및 제28조와 같음)
--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 2의2.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세무공무원 교체 명령 요구 및 징계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해 심사하는 경우 및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해 의결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에의 참여 및 의견 제출

5.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채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변호사법」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세무사법」

제17조(징계)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록취소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견책(譴責)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 요구된 세무사가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6조에 따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④ 해당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수 없다.
- ⑤ 재정경제부장관은 세무사가 제2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⑥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계를 명하는 경우 징계사유, 징계내용, 공직퇴임세무사인지 여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징계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그 세무사, 소속협회 및 국세청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⑧ 소속협회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⑨ 세무사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항에 따른 통보·공고 및 제8항에 따른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5조의3(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4(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3항 제1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해당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감사담당관 박지혜
연 락 처	02-2091-2064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91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인용 조문 현행화(안 제5조, 제6조)

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 이관 신설[안 제7장(제27조~제29조), 부칙 제3조]

○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규정 신설(안 제27조)

- 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안 제28조)
- 선정 대리인 의무 및 우대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9조)
- 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안 부칙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10층 감사담당관

【전화: 02)2091-2064, 팩스: 02)2091-6309, E-mail: ekdse@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제안이유

상위법령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규정(제12조) 이관 신설[안 제5장(제20조), 별지 제31호서식~별지 제33호서식]

- 제5장의 제목 “선정 대리인” 추가
- 선정 대리인 신청 서식 신설(안 제20조제1항, 별지 제31호서식)
- 선정 대리인 지정통지 서식 신설(안 제20조제2항, 별지 제32호서식)
-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서식 신설(안 제20조제3항, 별지 제33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등, 붙임 2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완료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2026. 2. 12. ~ 3. 4.(20일간)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선정 대리인

제2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1호서식부터 별지 제3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1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과세연 도	기분	세목	세액	과세예고통지·세무조서결과 통지·부과처분 등을 받은 날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별지 제32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등 미 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성명		자격	
사무실			
연락처	(전화)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청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락처	
주소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관인생략

[별지 제33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사건 명세

[illegible]

* 결정내용: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붙임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5장 선정 대리인</u> <u>제20조(선정 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u> <u>②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다.</u> <u>③ 조례 제28조제5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u>

<신 설>

[별지 제31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본,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함)			
	과세연도	기본	세목	세액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 통지·부과처분 등을 받은 날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불복청구인(이의신청인)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 개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
- 법인: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이고, 자산가액이 5억원 이하
2. 「지방세기본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며,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2. 법인: 매출액 및 자산가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제출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신 설>

[별지 제32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산청 결과 통지

① 신청인 용

○ 신청인 : ○○○ 귀하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등 미충족)의 사유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② 선정 대리인 용

○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 ○○○ 귀하

신청인 ○○○님이 '00.00.00. 제출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귀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으로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지정 접수건(지정사건)

신 청 인(청구인)		접수(사건)번호	
과세기간·세목·청구세액		연 락 처	
주 소			

-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청장 관인

<신 설>

[illegible]

※ 결정내용 : 인용(직권취소에 따른 각하, 재조사 포함), 기각, 각하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개인인 경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하며,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인 경우: 「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삭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선정,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채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및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서의 납세자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법 제93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이의신청인등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신청인등의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종합소득금액의 경우: 5천만원. 이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전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③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전에 지방자치단체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의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하고, 해당 신고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가액을 대상으로 한다.

1. 매출액의 경우: 3억원

2. 자산가액의 경우: 5억원

④ 법 제9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등”이란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를 말한다.

⑤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천만원을 말한다.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고, 시

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3(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 ①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선정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선정대리인 신청 및 통지 등)

- ① 조례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대리인 신청

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③ 조례 제5조의3제5항에 따른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검 토 의 건 서

※ 담당자 : ○○○과(동) ○○○ (☎:)

개 정 안	검 토 의 건	
	수 정 안	검토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6-292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법명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의 범명 변경(안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는 2026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참조: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56(방학동), 도봉구청 건축과

【전화: 02-2091-3683, 팩스: 2091-6344, 전자우편: wngud9120@dobong.go.kr】

라.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도봉구청 홈페이지(www.dobong.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 법령의 법령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령 명칭을 현행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의 법령 변경(안 제8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붙임 2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합 의: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아동영향평가 결과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2)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4) 아동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1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6. 2. 12.~3. 4.(20일간)

나) 제출된 의견: 입법예고 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서울특별시 도봉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하기”를 “도모하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설치방법)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설치하며, 피난구조설비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방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⑥ · ⑦ (생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도모하기</u> ----- ----- ----- ----- ----- -----.
	⑥ · ⑦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① 특정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구(舊)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의 조문 중 법률명의 현행화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건축과 오주형
연 락 처	02-2091-3683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

□ 조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00과)

개정안	검토의견	
	수정안	사유

그 밖 에 린

통장 모집 재공고(2차)

☐ 모집 대상

모 집 통	관 할 구 역
제11통	해등로12길 44 (창동주공2단지 201동~203동 및 관리동)

☐ 신청자격

- 해당 통의 관할 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자
-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자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1부(동 주민센터 비치)
 -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연서 또는 해당 통의 반장 2인 이상 추천
- 이력서(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기타 주요경력 등 증빙서류(봉사활동 관련서류 등)

☞ 제출서류 양식은 [도봉구청 홈페이지\(알림/예산-알림마당-고시/공고\)](#)에서 출력가능

☐ 접수기간: 2026. 2. 6.(금) ~ 2026. 2. 13.(금) 【8일간】

- 근무시간(09시 ~ 18시)내 접수,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우편 접수는 마감일 내 소인 날인분에 한함)

☐ 문 의: 창5동 주민센터 (☎02-2091-5777)

※ 통장이 하는 일

- 반사회보(도봉뉴스) 전달 및 관할 통 내 반장 추천 및 관리
- 각종 통지서(민방위, 취학통지서 등), 홍보물 교부 및 전입자 사후 확인
-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 기타 구정 및 동정 주요사항 홍보와 주민불편사항 접수·신고
- 그 밖의 구(동)정을 위한 협조사항 등

도봉구 창제5동장
창제5동장인

11통 관할 구역도



통장지원신청서

☐ 통 명 : 제 통

☐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직업 또는 주요경력		전화번호(집, 핸드폰)	
주 소			

상기 본인은 창5동 제 통장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해당 통 세대주 10인 이상 연명인 경우

연번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서명 또는 날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 반장 2인 이상 추천인 경우 : ()통 ()반장 성명 (인)

()통 ()반장 성명 (인)

도봉구 창제5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창5동주민센터에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 초본, 지방세납세증명서	통장후보자 확인 및 통장 위촉	5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내용

본인은 창제5동 통장 모집 공고에 따른 통장지원 신청 시 도봉구 및 창5동의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행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반 처리 절차에 동의합니다.

- ① (개인정보 보유목적) 통장추천 심의 및 위촉, 추후 통장 활동 시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 ②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관할구역 내 거주기간 등 통장후보로서 적정성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 제반사항
-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이용) 통장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위해 구성위원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 ④ (개인정보의 보유 및 제공) 기록물보존기간에 따라 제공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통장 위촉 후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창제5동장 귀하